

대구고등법원 2022. 9. 6 선고 2022나213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등]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2. 9. 6 선고 2022나2135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가합205999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서한규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문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남봉하

변론종결 2022. 8. 9.

판결선고 2022. 9. 6.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가합20599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표 중 순번 2의 지급액 “7억 5,0000만 원”을 “7억 5,0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93582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다254693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9면 제9행의 “① 이 사건 위약금 14억 원은 주식양도대금 68억 원의 약 20%로서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보다 다소 많기는 하다”와 마침표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위약금약정이 주식양도대금 잔금 54억 원 지급에 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채무액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비율은 약 26%(14억 원/54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약금약정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전체와 관련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위약금약정이 2018. 10. 2.자 주식양도대금 잔금 54억 원 지급 약정(갑 제10호증)에 관하여만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원고의 대금 미지급에 관하여 불이익을 정한 최초 주식양도계약 제4조 제3, 4항(갑 제1호증 제1면)이 이 사건 위약금약정과 별개로 적용될 수 있어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하다]』

○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제7, 8행의 “이는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이자 C의 대주주인 피고의 손해로 귀결된다”와 마침표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점에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피고가 입은 손해가 전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 총 발행 주식의 상당 부분인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고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은 C의 경영진과 최대 주주가 교체되었음을 의미하는데, 불과 2개월 만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다시 이루어진 것은 C에 대한 대외적인 신인도와 평가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이 사건 위약금약정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부당한 압박을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위약금약정은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한 결과로 도출된 약정으로 판단된다. ㉓ 원고는 2018. 9. 18.자 변경계약을 통하여, 2018.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7억 원(2017. 12. 7.자 최초 주식양도계약에서 2018. 7. 31. 지급예정 금액 10억 5,000만 원 중 2018. 7. 10. 지급된 3억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억 원)에 대한 지급기한을 2018. 10. 4.로 연장받았다(갑 제1, 5호증). 이 사건 위약금약정은 2018. 9. 18.자 변경계약과 근접한 2018. 10. 2. 체결되었다. ㉔ 원고는 이 사건 위약금약정을 통해서 2018. 10. 4.까지 지급하기로 한 6억 원(지급예정 금액 21억 원 중 2018. 9. 19. 지급된 15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6억 원)에 대하여 지급기한을 다시 2018. 11. 15.로 연장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갑 제5, 10호증). 2018. 11. 15.까지만 미지급 대금 합계 54억 원이 지급된다면 이 사건 위약금약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2018. 10. 2.자 변경계약 제1, 5조. 갑 제10호증). ㉕ 이 사건 위약금약정은 원고의 대금 미지급에 관하여 불이익을 정한 최초 주식양도계약 제4조 제3, 4항(갑 제1호증 제1면)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초 주식양도계약 제4조 제3항이 적용된다면 원고는 기지급한 29억 원 중 10%인 2억 9,0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고, 최초 주식양도계약 제4조 제4항이 적용된다면 원고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C 보통주 6,320주를 액면가인 주당 1만 원씩 총 6,320만 원(6,320주×1만 원)에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 당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원고는 2019. 4. 22. 자신이 소유한 C 보통주 6,320주를 총 5억 원에 매도하였는데(갑 제22호증의 1), 만약 E(원고의 전처로서 원고와 함께 C 주식을 매수한 사람)와 함께 2021. 12. 9. H 유한회사에 매도하였다면 주당 130,011원(매매가액 11억 2,200만 원/8,630주)씩 총 821,669,520원(6,320주×130,011원)에 위 보통주 6,320주를 매도할 수 있었다(을 제13호증의 1).

㉖ 또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 소요된 기간만큼은 이 사건 주식을 타에 처분할 기회를 상실하기도 하였다(을 제7호증).』

○ 제1심판결 제10면 제1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의 기타 여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그 밖에도 ㉑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주식양도대금을 그대로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거나(원고 2021. 10. 8.자 준비서면 제6, 7면), ②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강요하여 원고로 하여금 C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대금 일부를 지급하게 하였다거나(원고 2021. 10. 8.자 준비서면 제6, 7면), ③ 이 사건 위약금약정이 피고의 강권에 의하여 체결된 것(원고 2021. 12. 15.자 준비서면 제11면)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명, 판사 송영복, 판사 이영제